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(법률 제17895호, '21. 1.12. 공포, '21. 7.13.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성폭력방지조치에 고충처리 창구 마련 및 고충담당자 지정 내용 추가
(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5호)
- 나.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'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'으로 지정·위탁하는 근거 및 시·도 '지역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' 위탁 근거 마련(안 제2조의2)
- 다.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,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,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 포함(안 제2조의3 제1항)
- 라. 국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·군·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, 피해자가 다수인 성폭력 사건 등 현장점검 실시 기준 마련(안 제2조의3 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”을 “다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

5.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

제2조제4항 중 “제5호”를 “제7호”로, “국가기관 등”을 “국가기관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재발방지대책의 제출은 법 제5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조제5항 중 “법 제5조제6항”을 “법 제5조제7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법 제5조제7항”을 “법 제5조제8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“법 제5조제9항”을 “법 제5조제10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“국가기관 등”을 각각 “국가기관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각 호

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10항”을 “법 제5조제11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1항)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부장관이”를 “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”로, “같은 조 제1항에 따른”을 “지역”으로, “지원기관”을 “지원기관(이하 “지역 지원기관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”을 “시·도지사는 제2항”으로, “관보”를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”로 한다.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(이하 “중앙 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위탁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3(성폭력 사건 발생시 조치)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
2.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

3.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8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해당기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국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

2. 피해자가 다수인인 성폭력 사건

3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) ①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”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		제2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의 실시) ① -----		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		-----		
2. (생략)		-----		
② <u>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(이하 “국가기관 등의 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20조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와 통합하여 할</u>		1. <u>다른</u> -----		

		2. (현행과 같음)		
		② <u>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-----		

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4. · 5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(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⑤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결과를 전산입력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되,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

⑥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여성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

5. 성폭력 고충담당자 지정

6. · 7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 제7호

-- 국가기관등-----

-----.

⑤ 법 제5조제7항-----

-----.

⑥ 법 제5조제8항-----

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⑦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 실시에 대한 점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

⑧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등 전문기관·단체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⑨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폭력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교재, 자료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-----.

⑦ ----- 법 제5조제10항-----

-----.

⑧ 국가기관등-----

-----.

⑨ -----

----- 국가기관등-----

-----.

⑩ 법 제5조제10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제2조의2(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) <신설>
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

⑩ 법 제5조제11항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조의2(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6조에 따른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(이하 “중앙 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여 위탁한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--- 지역 ----- 지원기관(이하 “지역 지원기관”이라 한다)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
기관이나 단체

가.·나. (생략)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
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
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

<신설>

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·도
지사가 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-----

--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-
-----.

제2조의3(성폭력 사건 발생시 조
치)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
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여성가족
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재발방지
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
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
2. 성폭력 예방조치 및 성폭력 예
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
3.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8
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조치에
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해당기관 내 성폭력
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
요한 사항

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여
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
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건 중

제7조의2(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·지정운영)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1. <u>국가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</u> 2. <u>피해자가 다수인인 성폭력 사건</u> 3. <u>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</u> ③ <u>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대상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u> 제7조의2(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·지정운영) ① ----- ----- <u>시·도지사</u>----- -----
--	--

<u>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·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② (생략) 제10조(권한의 위임)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<u>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에게 위임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장·군수·구청장</u>----- ----- -----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95